

#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공원녹지과

제정 2016·3·16 조례 제1220호  
일부개정 2016·7·5 조례 제1234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 
일부개정 2018·9·28 조례 제1424호  
(이천시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 
소재지에 관한 조례)  
일부개정 2019·1·1 조례 제1464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0·12·29 조례 제1661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3·3·6 조례 제1900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5·12·26 조례 제233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이천시 백사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보존하고, 생태적으로 보호·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명소로 육성·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5·12·26>

- “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”(이하 “군락지”라 한다)란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백사면 소재 경사리, 도립리, 송말리 일대에서 자라는 요보호 산수유나무의 집단로서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- “요보호 산수유나무”란 나무의 하부본체 직경이 30센티미터 이상 또는 군락지의 전체적인 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수유나무를 말한다.
- “수목의 집단”이란 「입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요보호 산수유나무 2그루 이상의 집단을 말한다.
- “산수유나무 매입사업”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에 의한 가치 있는 요보호 산수유 나무 중 불가피한 개발, 토지매매, 기타사유 등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농가의

##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산수유나무를 시에서 매입하는 사업을 말한다.

5. “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한 주민활동”이란 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하여 펼치는 산수유나무 보호운동 및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위원회 설치)** ① 시장은 군락지의 보호 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육성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

-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, 공원녹지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백사면장, 이천백사 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<개정 2016·7·5, 2019·1·1, 2020·12·29, 2023·3·6, 2025·12·26>

1. 이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

2. 이천백사 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

3. 백사면의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4. 그 밖에 수목 및 조경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와 함께 한다.

-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군락지의 보호 ·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

2. 매입사업 및 관리계획 등 군락지 보호 육성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

3. 산수유 고목 우수관리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

4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군락지 보호·육성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 및 수당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회의를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맡는다.

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8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군락지의 보호·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군락지 내 필지별 산수유나무 식재 현황, 소유주, 수령, 주수, 수목의 보존상태, 재배목적, 장려금 지급여부, 요보호 지정 필요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군락지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2.26>

1. 요보호 산수유나무 선정 및 매입사업

2. 산수유 고목 우수관리 가구(농가 등)에 대한 장려금 지급

3.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

4. 요보호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 도입

##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5. 산수유식품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군락지 보호·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9조의2(요보호 산수유의 관리)** ① 시장은 요보호 산수유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개선 및 식생 정비
2. 병해충 예찰 및 방역
3. 인위적 피해 및 훼손 예방·복구
4. 가지치기, 외과수술, 영양공급 등을 통하여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
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요보호 산수유의 보존을 위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진료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「수목진료법」에 따른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·12·26]

**제10조(산수유나무의 매입)** ① 제2조 제4호에 따라 요보호산수유나무를 시장에게 매도를 하고자 하는 희망 소유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매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백사면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·9·28>

② 시장은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매입의 타당성과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후, 검토하여 분기별로 위원회를 열어 매입 여부를 결정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3일 이내에 소유자(신청인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산수유나무는 토지, 건물과는 별개로 입목에 대하여만 소유권이 시장에게 있다.

④ 시장은 매입이 완료된 산수유나무에 대하여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시의 재산으로 표시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매년 요보호 산수유나무를 일괄 선정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.

**제11조(장려금의 지급 및 신청)** ① 제9조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군락지 내 1필지 안에 나무의 하부본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인 산수유나무 3그루 이상을 병해충이나

##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훼손됨 없이 우수하게 관리하고, 주변 환경 또는 다른 조경수목과 어울려 아름답게 조성하여 관리하는 농가 또는 일반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급한다. <개정 2025·12·26>

-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금액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, 가구당 지급금액은 평가순위(최우수, 우수, 장려)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은 해당 가구주가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매년 4월 20일까지 백사면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에 신청해야 하며, 관련 공무원은 7일 이내에 현장을 답사하여 외부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을 붙여서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·9·28>
- ④ 장려금의 지급은 연 2회(6월, 12월) 거주지 이전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지급한다.
- 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장려금 지급대상 수목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.

- 제12조(주민활동 지원)** ① 제9조제3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수유 보호활동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활동을 재정지원하는 경우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·7·5 조례 제1234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- ⑦ 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3조제4항 중 “축산임업과장”을 “산림공원과장”으로 한다.

### ⑧ 생략

부칙 <2018·9·28 조례 제1424호, 이천시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의 “백사면사무소”를 각각 “백사면행정복지센터”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확인자란의 “백사면사무소”를 각각 “백사면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부칙 <2019·1·1 조례 제1464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생략**

**제3조 생략**

**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⑯ 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중 “농정과장, 산림공원과장, 문화관광과장, 농업진흥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, 산림공원과장, 문화예술과장, 농업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⑯ 부터 ⑪ 까지 생략

부칙 <2020·12·29 조례 제1661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중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화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**

⑯ 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업정책과장, 산림공원과장, 문예관광과장”을 “관광과장, 공원녹지과장, 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**⑰ 부터 ⑳ 까지 생략**

부칙 <2025·12·26 조례 제2333호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5·12·26>

요보호 산수유나무 매입 요청(신청)서

소유자 (신청인)

○ 성명 : (생년월일 : )  
○ 주소 :  
○ 전화번호 :

매입 요청사항

토지소재지						매입 요청 수량
읍면	리	지번	지목	면적 (m <sup>2</sup> )	소유주	

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요보호 산수유나무<sup>1)</sup>의 매입을 요청(신청)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(인)

확인자 : 백사면행정복지센터 (직급) (성명) (인)

이 천 시 장 귀하

1) 요보호 산수유나무 : 나무의 하부본체 직경이 30센티미터 이상 또는 군락지의 전체적인 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수유나무

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별지 제2호서식]

요보호 산수유나무 매입결정 통보서

수신 : 귀하 (주소 : )

귀하께서 20 년 월 일 신청하신 산수유나무 매입 요청(신청)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.

----- 결정사항 -----

토지소재지					결정내용			비고
읍면	리	지번	지목	면적 (m <sup>2</sup> )	신청 수량	매입 수량	총매입 가격(원)	
								가격산정 내역 및 근거 별첨

20 년 월 일

이 천 시 장 (인)

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5·12·26>

산수유 고목 우수관리가구 장려금 신청서

신 청 인

- 성 명 : (생년월일 : )  
○ 주 소 :  
○ 전화번호 :

관리 중인 산수유 고목 내역

토지소재지						산수유 고목현황 총계
읍면	리	지번	지목	면적 (m <sup>2</sup> )	소유주	

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 
상기와 같이 산수유 고목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향토자원으로서 철저히  
보호·관리하고자 장려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(인)

확인자 : 백사면행정복지센터 (직급) (성명) (인)

이 천 시 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산수유 보호활동 지원신청서

1. 사업명 :
2. 사업기간 :
3. 사업내용 :
4. 사업비 산출기초

세부사업내용	소요액(천원)			산출기초	비고
	계	보조	자부담		
계					

5. 자기부담액 부담방법

※ 구비서류 : 1. 회원명부 1부

2. 정관 또는 단체의 규칙 1부.
3.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활동계획서 1부. 끝.

20 . . .

단체·법인명 :

대표자 성명 : (직인)

이 천 시 장 귀하